

제218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9. 12. 5.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 1. 경 과

의안 제178호로 2019년 11월 13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및 지역가입자에 대한 월별 보험료 하한액 지정에 따라, 조례에서 정한 지원대상의 보험료 기준을 개정하고 일부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조례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자에 대한 명칭 통일

(안 제2조, 제3조, 제6조)

나. 지원 대상의 보험료 기준을 ‘금액(12,000원)’에서 ‘월 최저보험료’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일 규정(안 제3조)

다. 지원 예산 범위를 한정하는 규정 추가(안 제7조)

라.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문장 정비(안 제2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 2)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2018-312호)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2019. 10. 10. ~ 10. 30./ 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본 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의 보험료 기준 등 관련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는 개정조례안임.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의 보험료 기준을 금액(12,000원)에서 최저보험료 기준으로 변경하고 지원대상 선정 기준일 신설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지 않거나 불명확한 자구 등을 정비하였음.

- 검토 결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되어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한 최저보험료 제도가 도입 시행되었으며, 최저보험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토록 하였음. 따라서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도록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의 보험료 기준을 최저보험료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참 고 자 료

## 1 국민건강보험법

### 제69조(보험료) ① ~ ③ (생략)

④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보수월액보험료: 제70조에 따라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2. 소득월액보험료: 제71조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에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

⑤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세대 단위로 산정하되,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72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부과점수에 제73조제3항에 따른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은 가입자의 보험료 평균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한 및 하한을 정한다.

##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및 하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생략)
2.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천분의 80 이상 1천분의 85 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천분의 60 이상 1천분의 65 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 3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제3조(월별 보험료액의 하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 18,020원
2.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 : 13,550원